국무총리 훈령 제289호 1994. 3. 3.

소관부처 : 건설부

제 목 : 백제문화권개발자원위원회 규정

백제문화권개발지원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4 년 3 월 일

국 무 총 리 이 회 창

백제문화권개발지원위원회 규정

제 1 조 (지원위원회의 설치)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,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백제문화권개발지원위원회(이하 "지원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 2 조 (지원위원회의 기능)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
2.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
3. 백제문화권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제 3 조 (지원위원회 구성)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,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된다.

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

1. 내무부장관
2. 교육부장관
3. 문화체육부장관
4. 농림수산부장관
5. 건설부장관
6. 교통부장관
7. 환경처장관
8. 충청남도지사
9. 전라북도지사

제 4 조 (위원장의 직문)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, 지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 (의견청취) 지원위원회는 백제문화권개발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6 조 (간사) ① 지원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및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장으로 한다.

제 7 조 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4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.